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광주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7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절차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를 군공항이전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

나.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다.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

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 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라.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마.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지역기업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을 명시(안 제9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재입법예고와 관계기관협의 동시 진행 예정

라. 기타 : 1) 재입법예고(2023. 7. 18. ~ 7. 27.)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한 내용

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이전사업·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가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과 초과사업비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유무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 금액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의 지원 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의 지원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사람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시행자
4.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개략설계도서
7. 계획평면도
8. 자원조달계획서
9.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10.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1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 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이전총괄과	
연 락 처	(02) 748-4539